

• 소통의 연수 • 통합의 연수 • 안전한 연수



연수구보



발행 · 편집인: 연수구청장 / 발행처: 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부록 제1344호 2022. 11. 29.(화)

【고 시】

○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2-74호(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) 1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연수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749-8652) 및 공원녹지과(☎032-749-872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2. 11. 29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I. 결정(변경) 취지

-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하는 사항임

II. 위치

-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10 일원

Ⅲ.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- 공원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별빛 공원	근린 공원	연수구 선학동 210 일원	34,518	감) 0.6	34,517.4	2015.9.7. (인천광역시 고시 226호)	

○ 공원 결정(변경) 사유서

공원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별빛근린공원	경미한 면적 변경 (34,518㎡→34,517.4㎡, 감0.6㎡)	-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중 면적산정 착오 정정 - 주변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지 분할, 면적 반영 (도시계획선 변경 없음)

Ⅳ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/>)에서 열람 가능